의안번호	2202566
의 뢰 인	정성국 의원
회 답 일	2024.08.21.
추계번호	24C2509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31억 4,500만원(연평균 46억 2,900만원)으로 추계

[표 1]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99	99	99	99	99	497	99
안 제8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4,329	4,428	4,528	4,631	4,732	22,647	4,529
합 계	4,429	4,527	4,628	4,730	4,831	23,145	4,6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평가 및 조사ㆍ연구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야 한다. (제5항)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 제5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1항)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제4항) 시・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량규정
		(제5항)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1항)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항)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량규정
		(제5항)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5항)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 제8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제1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2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제3항)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5항)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항)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9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항)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4항)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7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항) 그 밖에 지원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안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 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2항)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재량규정
		(제3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를 받아야 한다.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제4항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6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항)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2조 (학생별 지원・관리)	(제1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관리	의무규정
		(제2항)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항)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항)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4조(연수)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항)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소년통합지원 체계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1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항)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제2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17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스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각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 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연계・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3항)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6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7항)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8항)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4	안 제18조 (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1항)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국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 내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5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6항)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7항)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5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3	안 제6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위원회 운영 방식과 소요 예산이 교육지원청별 실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량이나 단가 등을 일률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별 운영 비용은 위원 정수, 자격, 심의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는데, 제정안에서는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업량이나 단가 등을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8조제1항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	
5	안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안 제8조제2항 등(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안 제9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안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안 제12조 (학생별 지원 · 관리) 안 제14조(연수)		·안 제7조 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예정)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1)] (안 제7조) 한국교육개발원 내 관련 조직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운영[2)]('24년 소요예산 8억원) (안 제8조제2항) 교육복지안전망, 위(Wee)센터, 학습클리닉센터 등 각종 센터와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안 제9조) 2023년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 실태조사를 실시중 ('23년 9.8억원 집행, '24년 9.1억원 계약) (안 제10조·제11조·제12조)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사업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팀을 일원화하고 대상학생에게 교육복지, 기초학력, 상담 등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취약학생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 (안 제14조)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중 ('24년 특별교부금 30억원) [참고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교육부)
6	안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협력체계의 운영 방식과 소요 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정안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는 경우 참여자(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이나 기타 운영 경비 등이 발생 가능 ·다만, 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제정안의 내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만으로는 해당 협력체계가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 경우 집행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수당 지급 방법이나 규모 등이 달리 결정될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또한, 수당 외의 운영 경비는 협력체계 구축 규모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정안은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사업량이나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안 제1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복귀 지원)	×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보 확보 및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여 사업 예산이 확대될 수 있음 ·다만, 현시점에서 확대될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량과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7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시스템의 구축 방향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정안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방법으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등 기존 정보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스템 구축 방향에 따라 산출되는 직무별 투입인원 및 투입공수, IT지원기술자의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나,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향과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량과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3]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9	안 제18조 (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 및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10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으나, 위탁될 업무 범위 및 구체적 사업, 소요예산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가 곤란하거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닌 이상의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②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안 제8조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위원 정수와 구성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교육부 소관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사례[4]를 준용하여 15명으로 하고, 이 중 당연직 위원은 2명[5](위원장·간사위원),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3명으로 가정

1) 교육부에서 추진하려는 각 사업이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볼 것이나, 대부분의 사업은 특별교부금이나 기존 예산 등으로 추진(예정)되고 있어 제정안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으로 추정하지 않음.

2) 주요업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정책연구,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운영지원, 누리집 운영·관리, 가이드북 제정' 등임(자료: 교육부)

3) 참고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지역자원(학생지원 기관·서비스)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개통하였으며('24.5.) 지역자원 정보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갱신예정임(자료: 교육부)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가정

5) 당연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별로 상이하나,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중 부교육감이 위원장, 소관 국장이 간사위원이 되는 사례(학교급식위원회·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있음을 고려하여 2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각각 연 3회 및 15만원으로 가정[6)]

○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비용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추계

-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청에 설치되는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비용만을 추계
- 제정안은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경우에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직접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경상운영비와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가 동일한 규모인 것으로 가정하고 소요 비용을 추계
-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에 한함. 이하 같음) 위(Wee) 프로젝트 사업의 인건비·경상운영비 예산을 준용한 뒤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본청에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총 8명(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전문상담교사 4명, 전문상담사 1명)으로, 2024년도 기준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예산을 약 2억 4,303만원으로 편성[7)]
  *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인력 구성과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본 추계에서는 교육지원청(wee센터) 및 학교(wee클래스)를 총괄·조정하는 시·도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담당 부서의 역할이 제정안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예산 수준을 준용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8)]

---

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례 중 최다 회의 횟수와 최고 단가를 준용하여 각각 3회, 15만원으로 하고, 해당 횟수 및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7)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외에도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비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및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례로부터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계

8)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정안에 따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위(Wee) 프로젝트와 추진체계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음
안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학생맞춤통합 지원 업무 수행, 관련 지원센터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위원 수에 회의 횟수, 수당 단가 및 시·도교육청 수(17개)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연평균 9,900만원)

○ 위촉위원 수는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총 정수(15명)에서 당연직 위원(2명)을 제외한 13명으로 하고,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는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연 3회, 15만원으로 함

○ 위촉위원 수(13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15만원) × 교육청 수(17개) = 연간 약 9,900만원

[표 2]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99	99	99	99	99	495	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비용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합한 단가에 시·도교육청 수(17개)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6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연평균 45억 2,900만원)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단가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위(Wee) 프로젝트 사업의 인건비·경상운영비 예산을 준용하고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표 5]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1개 지원센터(A)	255	260	266	272	278	1,332	266
17개 교육청(B)	17	17	17	17	17	-	17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비용(C=A×B)	4,329	4,428	4,528	4,631	4,732	22,647	4,5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31억 4,5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제정안 전체에 대한 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99	99	99	99	99	497	99
안 제8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4,329	4,428	4,528	4,631	4,732	22,647	4,529
합 계	4,429	4,527	4,628	4,730	4,831	23,145	4,6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참고자료]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전문 기관(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 '22년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지정·운영 현황: ('03.~'14.) KEDI → ('17.~'21.) 한양대 → ('22.~) KEDI

–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 → [기능 확대*]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 지원

* 현황조사 및 성과관리, 연수 및 컨설팅, 시도협의회 및 지자체 등 연계 방안 모색 등

○ 통합지원 모델 개발, 실태조사 설계, 연수과정 및 학생성장측정도구 개발 · 보급 등 현장의 학생맞춤 통합지원 기반 구축 지원

– 조기발굴 및 통합진단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안 마련, 기관·전문가 정보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통합이력관리 근거 마련 必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지정·운영

○ 선도학교가 학생 지원을 의뢰할 경우 학생(학교)을 지원·연계하는 모델 등 교육지원청과 학교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 개발

※ 연계·통합범위 및 대상, 방법 등은 기관별로 정해서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춰 각종 사업(센터*) 및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탄력적 운영

* 교육복지안전망,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클리닉센터, 학교지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 운영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운영('23년 20개) 후 단계적 확산 유도

※ '23년 20개 → '24년 50개 →'25년 90개 목표(누계)

※ 시범교육지원청이 희망할 경우 국가정책수요 인력 확보 시 우선 배치

◈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예시(안)

– (지정기간) 지정 후 3년 ※ 선도학교가 없어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가능

– (전문 컨설팅) 조직, 교육,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교육지원청별 결과 분석(운영 과정의 성공·실패 경험 등) 후 개선안 제시 → 교육지원청별 모델 개발

– (행정적 기반)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내 시업별 예산을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 신청·보고 서식 통일 등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 과도한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학교단위 행정조사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생지원 사업 현황 파악

※ 기관별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질적조사 표본 추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요 기반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학생맞춤지원에 대한 학생·학부모 수요(설문/면담) 및 학생성장지표조사*(설문조사)

* 학교 적응력, 자기이해, 사회성, 행복감, 공동체 및 시민의식, 안전 및 신체적 건강 등

○ 조사 대상, 표집 규모, 조사 영역 등 조사방법 및 방식 설계 후 '23년 시범조사를 거쳐 '24년 이후 매년 본조사 실시 예정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농어촌 포함) 진행 중('22.8.~'23.2.)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운영

○ 사업별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및 팀*을 하나의 유연한 팀(위원회)으로 구성·운영하고 안건에 따라 팀원이 유동적으로 참여

* 교육복지심사위원회, 기초학력다중지원팀,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

– 학교별 학생 및 교직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팀(위원회)을 활용·전환하거나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신설도 가능

◈ 선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시(안)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안) ※ '22. 6월 통합워크숍 토의 결과 가공(예시)

▸ (위원장) 교장 또는 교감

▸ (위원) 교육복지·학습지도·생활부장,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교육복지사 등

▸ (사안별 담당자)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학교폭력, 성폭력, 다문화 등 각 사업별 담당교사(학교폭력, 기초학력, 다문화 등),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

○ 학교급별(초·중·고) 순차적으로 선도학교 운영 모델(안) 개발·보급('22.하~'23.하) 후 선도학교* 지정 운영('23.~'27)

* 교육부 선도학교는 순차적으로 총 100교(초40, 중30, 고30) 지정 목표, 시도교육청별 자체 선도학교 운영 가능

□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학생의 학습·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구축('21. 44개 → '22. 114개 → '23. 156개 목표)

* ('21.6.) 전체 11,777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1,539교(13%), 미배치교 10,238교(87%)

※ 안전망별 인력(센터당 1~3명) 및 운영비**(센터당 3~10천만원, 특교) 지원

** 위기학생 긴급지원,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네트워크 구축비, 사례관리, 연수, 협의회 등 지원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방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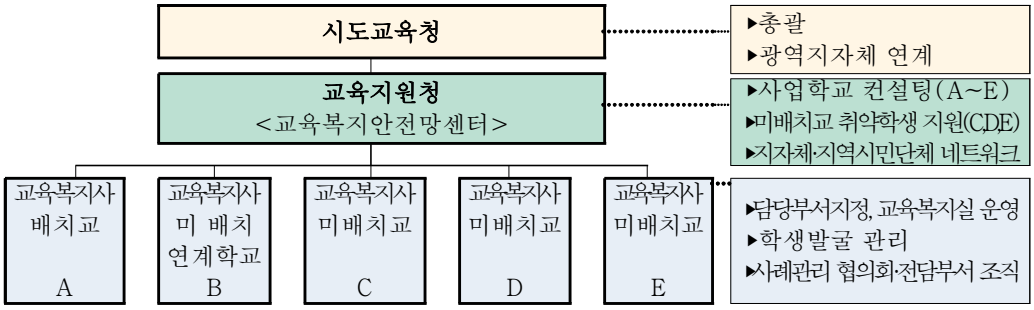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역량 강화(교원 연수)

○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구성원 대상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동학년 협의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자체워크숍 등 연수 방법 다양화

※ 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 등) 협의회 개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연수, 통합지원 연합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역량 강화 연수, 신규·자격연수 등

○ 우선 연계 14개* 사업의 경우 담당자 연수, 협의회, 워크숍 등 개최 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사업 부서 요청 시, 교육과정이나 연수 전문요원 인력풀 제공

*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비, 교육급여, 아동학대 예방, 미인정결석, 위(Wee), 학교폭력, 성폭력, 기초학력, 다문화, 학업중단 예방, 학교 내 대안교실, 특수교육대상자

○ 교원양성과정(교대 등)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 운영 시범사업 추진

○ 교육(지원)청, 학교 등 현직 및 퇴직자,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합지원 연수 전문요원으로 선발·교육 후 활용 등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맞춤형 지원 법적 제도 마련

○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의 수집 · 관리 및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정보 연계 근거 마련

* 학교급 간, 학교-교육청 간, 학교 · 교육청-지자체·외부전문기관 간 등

– 보건복지부가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교 내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시도별로 구축·관리하고 필요 시 시도간 연계, 시스템 보안(제한적 권한 부여, 로그 · 열람 기록 관리 등) 강화,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

○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규정, 단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지원–사후 통보 근거 마련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 중단없는 학업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자료: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2022.12.)에서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